



교회법 church law 제1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교회법 제1호(2020-1)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0. 4. 25.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리와 교회법

칼빈은 제네바를 떠나 당시 독일령이었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부처를 만나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아 섬겼다. 이 기간 칼빈은 장로회 4직제를 완성했으며 교회개혁에 있어서 권징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칼빈은 화려했던 제네바 시의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돌아왔다.

칼빈의 제자 베자(Theodore Beza, 1519- 1605)는 그의 저작 『칼빈의 생애』(The Life of John Calvin)에서 당시 칼빈에 대해 “칼빈은 교회의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돌아와서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인 정치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며, “제네바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교리와 교회의 권세가 온전히 보장된 장로제도가 세워지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고 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강요」를 통한 교리 및 신앙고백과 교회법으로 가톨릭교회를 대항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칼빈은 교리와 교회법을 통해 로마가톨릭을 대항했고, 정치제도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영을 반대한 것만 아니라 전 회중이 직접적으로 교회 행정



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반대하였다. 회중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고 그들이 회중을 대신하여 교회 업무를 수행할 때 교회 질서가 유지됨으로 교회회의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연합을 부정하는 회중교회, 연합을 주장하지만 평등과 자율을 부인하는 감독정치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기준을 갖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때문에, 칼빈은 회중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장로정치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간주하였다. 노회와 총회 같은 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기관이므로 교회 연합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실천했다.

교회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정족수 고찰

최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목 차

1. 서론
2.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의 관계
 - 1) 정관변경은 종교의 자유 본질
 - 2) 교단탈퇴와 종교의 자유 본질
3.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동일 정족수
 - 1)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을 경우
 - 2) 교단탈퇴 정족수
4. 관련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례
 - 1) 강남교회 사례(정관변경 정족수 판례)
 - 2) 두레교회 사례(교단탈퇴 정족수)
5. 대법원 판결 의의
6. 결론

요약

대법원은 2006년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회 분쟁에 대한 재산귀속과 정관변경, 교단탈퇴에 대한 판례 법리를 변경하여 새로운 방향의 판례 법리를 내놓았다.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42조에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례 법리는 전국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정족수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의사정족수 없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정족수는 교단탈퇴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정족수라고 판단했다. 이는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법리오해이다. 결국 이같은 대법원 판례는 이제 지교회가 교단탈퇴가 쉬워지므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갇질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보여준다.

1. 서론

종교단체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며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할 수 있다. 교회는 종교의 자유본질과 독립성에 의해 독립교회로 존속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다. 교단이 지교회로 하여금 가입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는 없다. 그 어떤 경우라도 교단이나 교단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칼빈대학교(Ph.D.),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교회 정관법 총칙」 외 다수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 표준 회의법> / 회의록 작성의 실제
소재열 박사 지음, 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 정가 15,000원 (031-984-9134)

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종교단체인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교회 내부의 자치법규 제정과 변경, 그리고 소속된 교단에 가입과 탈퇴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 자유의 원리와 독립성에 근거한 것으로 제3자가 이를 강제화 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정관변경을 지시하거나 교단탈퇴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써 이 모두는 종교의 자유 원리와 지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이다.

지교회의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등은 종교의 자유 본질의 범주 안에 있지만 그 시행에 관해서는 엄격성이 요구된다. 동료 교인이 상대 교인의 종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특별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도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관제정이나 변경, 그리고 교단탈퇴 등은 보장하되 절차는 엄격해야 한다. 그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따라서 종교 내부적인 규정과 법원의 판례입장 사이에서 오는 충돌을 정리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내부의 자치법규를 무시하거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교회에 한하여 단체법의 기본원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하여 판단하며, 교회는 어떻게 이를 준비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의 관계

1) 정관변경은 종교의 자유 본질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의 자유 본질을 대표자나 구성원 일부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변경은 구성원의 총의에 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3요소로 구성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결사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인 교회를 설립하여 구성원이 되고 집회의 자유에 의해 집회에 참여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자유는 반드시 그 단체의 자치법규에 구속된다. 교회 내에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행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단체의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행사된다.

결국 교회 정관 제정과 변경은 종교의 자유

의 원리와 단체의 독립성에 의해 구성원인 교인들의 기본 권리며, 이러한 권리는 단체의 구성원과 총의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교회 구성원의 총의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의방식들을 무시한 행위나 물리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자치법규인 정관에 의해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종교의 자유는 내 혼자만의 독불장군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불법행위들은 회원 자격 박탈 대상이 되며,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2) 교단탈퇴와 종교의 자유 본질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 종교단체란 지교회(개별교회)와 그 개별교회들이 모인 연합체 역시 종교단체라고 한다. 그러나 개별교회를 지교회로 한 반면, 교회들의 연합체인 종교단체를 약칭으로 교단이라고 한다(불교는 종단이라 함).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는 독립적인 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²⁾ 그러나 그 개

별 지교회가 특정한 교단에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는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다. 지교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분쟁으로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지교회 분쟁을 보면 대부분 지교회의 목사가 교회운영이나 재산문제, 심지어 개인적 비리로 소속 교단과 마찰, 교인들과의 세력다툼 등으로 분쟁이 발생되면 신앙과 교리를 핑계 삼아 지지자를 이끌고 교단을 탈퇴한 다음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교단에 가입하고는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교단을 탈퇴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혹은 행정총회, 감리교는 당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 의결방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효사유가 되어 원인 무효가 된다. 교단탈퇴는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른 지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총회를 통해 결의되어야 한다. 교단탈퇴의 법적 효력은 교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인총회적인 공동의회 결의로 발생된다. 공동의회에서 탈퇴 결의 후에 교단에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탈퇴결의 후 교단에 통보는 “탈퇴하였으므로 더 이상 행정지도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일 뿐이다.

교단헌법에 “교단탈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 지교회의 종교의 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지교회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할 경우, 이는 교회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한 자치법규이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2)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된다.

3.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동일 정족수

보편적으로 각 교회 정관을 보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는데 '교단탈퇴 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본다. 교회 정관 변경 정족수도 '당회 결의'로 정관이 변경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공동의회에서 변경을 결의하지 아니하면 다 무효사유가 된다.

현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소속 교단탈퇴 내지 소속 교단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³⁾

1)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을 경우

현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가 특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족수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예컨대 출석한대로 수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은 출석회원(혹은 투표수) 과반수로 한다"거나 "정관변경은 출석회원(혹은 투표수) 2/3로 한다"라고 할 때에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2/3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법리 때문이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교회 정관변경에 대한 논의를 왜 민법규정으로 설명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는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에 근거한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⁴⁾

교회의 정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에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법인의 정관변경을 규정한 민법은 제42조는 첫째, 정관변경 정족수는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단서조항으로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정관에 정관 규정이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규정일 때에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 정관변경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이 규정대로 시행하면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적법한 결의가 된다. 이때 전제 조건으로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 출석하는 대로 수집된 공동의회인지 아니면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달라질 수 있다. 출석회원은 의사정족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참조되어야 한다.

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 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등 참조).

2) 교단탈퇴 정족수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⁵⁾

정리하면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교단 변경을 사단법인의 목적 변경과 유사하다고 보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단탈퇴는 정관 변경 요인이 발생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는 교단탈퇴 정족수로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교인(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에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규정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라고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재적교인 확정 필요치 않은 가운데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 이것이 후술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례법이며, 이같은 법리에 의해 대법원은 교회의 교단탈퇴를 판단한다.

4. 관련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례

1) 강남교회 사례(정관변경 정족수 판례)

한국교회의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사항이 존재하게 되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인정하여 의사정족수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적용된 판례로 제한되게 되었다. 즉 정관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의결정족수만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강남교회는 2018~2019년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다212433)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피해가는 방법을 갖게 되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지교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사정족수 없이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혹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법리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42

5)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조 제1항의 단서인 ‘정수(定數)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전 의견권자 3분의 2 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랐다. 따라서 민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그 정수(定數)는 공동의회 출석한대로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회원을 정수로 판단하였다. 이같은 판단은 사랑의교회 건축관련 회계장부열람본인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같은 법리에 의해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3,000명을 재적교인(의결권)인 교회에 300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151명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하도록 되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선량한 풍속으로 사회 관념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민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확정된 판단에 의하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는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에서 정관개정은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반의결 사항으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재적교인 3,826명 중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한국교회에 위기인지, 기회인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교단이 ‘갑’ 질할 때 얼마든지 교회 정관을 변경하여 교단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단에 유익한 것인지,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두레교회 사례(교단탈퇴 정족수)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반대 측이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2020. 3. 2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되었다. 두레교회는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2016. 6. 2.에 시작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되었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의 면직출교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

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김○○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리자 고등법원 재판부가 소 취하를 받아 들어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반대 측은 이문장 목사가 통합교단 총회재판부에 의해 면직출교 처분을 받았기에 두레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결국 공동의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단탈퇴를 한 의결정족수 하자 여부가 법정 다툼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

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는 교단탈퇴 정족수가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고, 지교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두레교회의 교단탈퇴 결의 역시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두레교회 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이같은 두레교회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례 법리였다.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교단탈퇴에 관하여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을 적용함이 불가하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0. 3. 2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다.

금번 두레교회의 교단탈퇴 공동의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앞으로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감질하는 행위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교회가 정관에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한결 용이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대법원 판례 의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다.⁶⁾ 이러한 판례는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된다.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는 소속 교단과 그 교단헌법이 지교회 종교의 자유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며 지교회 정관을 앞설 수 없다.

교회 분쟁으로 교단을 탈퇴할 때에 정관에 교인총회에서 결의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부존재할 때에 결의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어 그 유명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다. 이같은 판례 법리는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요하며,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을 민법에 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판단하여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은 판결 이후 10년 넘게 유지해 오다가 새로운 변수가 일어났다. 지교회 정관에 의사정족수가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때에 효력 여부와 교단탈퇴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은 최 근래에 '가능하다' 라는 판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에 대해 민법의 법인 정관변경 규정인 민법 42조를 적용하였으므로 본 규정의 단서조항은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현대 교회에 시사한 바가 크다.

그동안 교단탈퇴와 그로 인한 종전교회의 재산 귀속은 다수결로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소수파로 되는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를 좇아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였던 교회에서 탈퇴하여 원하는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넘어서서 개개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준으로 교회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종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다만 종전 교회의 교인들은 결의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소속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 근래에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교단탈퇴 역시 출석회원 과반수면 교단탈퇴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재산귀속은 공동의회에서 교단을 탈퇴한 교인이 오히려 3분에 1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적교인의 다수결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 본대로 전체 재적교인이 3,826명 중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인 182명이 찬성할 경우 정관이 변경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렇다면 3826명의 교인 중에 182명이 교단탈퇴가 가능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적법하게 교단을 탈퇴한 182명에게 귀속되는 현실을 맞이했다고 본다. 특히 소속 교단이 지교회에 대한 강압적

6)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 참조.

지배력을 강화할 때에 교회는 쉽게 교단탈퇴 결의가 가능하다는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본 글을 통해 확인한 것은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된다. 정관변경에 관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정족수가 교단탈퇴를 위한 정족수라가 된다. 그 정족수 규정이 엄격한 규정으로 할 경우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엄격하겠지만 느슨하게 할 경우, 변경과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다.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정관변경 정족수와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취지와 목적이기도 하다. 정관이 모호하면 분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정관은 교회법과 법원의 판례 법리에 하자가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공동의회 소집방법, 의결방법은 「교회 표준회의법」(소재열 지음) 참조)


한국교회법연구소 도서안내
 031-984-9134



교회정관법 총칙
 소재열 지음 | 말씀사역 | 50,000원
 저자가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법학박사 학위논문 포함 본서는 부록으로 모범정관안과 시행세칙안을 수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해설
 소재열 지음 | 브엘북스 | 신국판 | 50,000원
 예장합동 교단 헌법의 정치편을 1,200페이지 분량으로 향촌적의 필독서로 교회실무를 집대성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권징조례 해설
 소재열 지음 | 브엘북스 | 신국판 | 50,000원
 예장합동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를 1,200페이지 분량으로 교회재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집대성했다.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지음 | 브엘북스 | 신국판 | 25,000원
 교회 분쟁 현장 보고서로 분쟁이 법원에서 어떤 법리로 해결되었는가를 수록했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
 소재열 지음 | 브엘북스 | 신국판 | 15,000원
 국가법령과 교회와 목회자, 직원의 과세제도와 이를 교회정관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법」은 매월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 원문이 공개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관련 논문과 세미나 및 각종 출판사역,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한 교회법과 법원 판례 법리를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교회법」을 통해 발표하며 이를 매월 발행합니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연구 사역을 위해 마중물이 되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 대법원 판례중심으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목 차

1. 서론
2. 교회 재산의 소유형태
3. 교회 총유 재산
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5.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6. 교회재산(총유재산)의 소송 당사자
7. 결론

요약

교인들의 연보, 현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재산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 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1. 서론

한국교회는 많은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교회 분쟁 중에 재산권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인들의 권리意識이 향상되고 교인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판

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교회법이나 대법원은 교회재산에 대한 법적 개념과 소유관계, 관리 보존 및 처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교회 재산의 법적 개념과 소유관계, 처분과 관리 보존에 대한 대표자 및 당회의 권리제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2. 교회 재산의 소유형태

교회 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일

관된 판례입장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현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⁷⁾

대법원의 이같은 판례 법리는 민법 제275조 제②항인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르는데 총유물권자(제277조)들이 사원총회(제276조)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대로 시행한다.

대법원은 교회 재산에 대해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현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현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회는 여러 현금이 있다. 현금이라는 형식의 모든 재산과 ‘기타 교회의 수입’, 즉 현금 이외의 ‘증여’, ‘이자 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교회재산이라 한다. 교인들의 현금으로 이루어진 재산 중에는 동산과 부동산, 기타 각종 채권 등이 있다.

3. 교회 총유 재산

교인들의 현금과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

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 중에 ‘공유’, ‘합유’, ‘총유’ 등 세 가지가 있다. 이같은 세 가지의 공동소유재산 중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총유’라고 한다. 총유란 교회 교인들의 공동소유 재산이라는 개념이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 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⁸⁾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①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다. ④총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①관리 및 처분은 교인총회적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각 교인은 교회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교회재산인 총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교회 재산은 공유나 합유보다 단체성이 강하다. ④

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없다.

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교인총회 결의 없이 재산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⁹⁾

대법원은 교인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권한을 넘은 대리권 행사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6조를 이해해 보자. 본인인 교회가 대리인인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에게 상대방인 제3자에게 1억 원의 돈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권한을 넘어 상대방(제3자)에게서 3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다. 여기서 1억 원은 유권대리이고, 2억 원은 무권대리이다. 그런데 제3자가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본인인 교회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법률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데 대법원은 교회 대표자가 권한을 넘어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교회 대표자인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담임목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판례이다. 이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 할지라도 교회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은 담임목사에게 교회 재산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사가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때에 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5.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적법절차의 요건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현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¹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 재산의 소유형태와 총유 재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 총유 재산은 처분 방법도 그 절차에 관해 대법원 판례로 확충되어 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없거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이 지교회 교인총회의 결의를 대신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교인총회의 결의로 교회의 당회에 교회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기타 당회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회 결의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앞서 살펴본 대로 제3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 의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때 대법원은 교회의 불법 재산처분은 민법 제126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책임은 무권대리권을 행사한 담임목사나 당회에 법적 책임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에 당회의 직무 중에 당회가 “부동산을 장리할 수 있

다”는 규정을 들어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당회가 교육관 부지를 처분한 교회가 있다. 당회결의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임시 당회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는 불법이며, 다시 소송을 통해서 되찾을 수 있다. 책임은 무권대리인인 당회원인 장로들이 져야 할 형편이다.

재산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①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야 한다.
 ② 그것이(정관 및 기타 규약)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안된다. 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해 당회에 위임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대로 재산을 처분하면 된다. 정관은 교인총회에서 제정 및 변경되었으므로 그 정관을 법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 교인총회의 결의 없는 불법 정관에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으로 당회가 재판을 처분한 행위는 위변조에 의한 재산처분으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법원에 소유권말소등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되찾을 수 있다.

6. 교회재산(총유재산)의 소송 당사자

교회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다. 여기서 교회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 했다. 이를 총유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개인 소유의 재산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재산은 총유재산으로 개인이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자.

1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총유재산’이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인바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첫째, ‘사원총회의 결의’, 즉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둘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은 교회 재산에 대한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유재산에 관한소송, 예컨대 ‘명도소송’, ‘등기말소소송’ 등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가사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개인 이름으로 해서 는 안 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홍길동’ 등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인들이 적법절차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 이런 종류의 소송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교회 정관에 있을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이러한 소송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홍길동’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같은 소송은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 교인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물론 교인총회는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회의록을 적법하게 진행 및 기록하여야 한다.

7. 결론

지금까지 본 글에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연보, 현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민법의 재산 성격상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보존행위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며,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은 교회 재산에 대한 관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재산에 대한 성격, 그리고 처분 및 관리보존행위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 모호 할수록 교회 재산 등과 관련된 교회운영은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운영의 전제 요건이 될 것이다.

교회 재정도 재산에 포함된다. 교회 재정 역시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으로 정관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결산승인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275조 제2항). 구체적으로 정관에 규정할 경우, 사원총회격인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결의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효가 된다(소재열 자음, 「교회 표준 회의법」 참조).

할렐루야! 드디어 두레교회의 모든 분쟁이 끝났습니다!



이문장 목사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합동) (MDiv)
 미국 Gordon-Conwell 신학교 (ThM)
 미국 Yale 대학 (STM)
 영국 Edinburgh 대학 (PhD)
 영국 Edinburgh 대학 교수 (1997-2000)
 싱가포르 Trinity 신학대학(TTC) 교수 (2001-2006)
 미국 Gordon-Conwell 신학교 교수 (2006-2010)
 두레교회 담임 (2010-현재)

총회재판국(통합)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교단(통합)탈퇴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020.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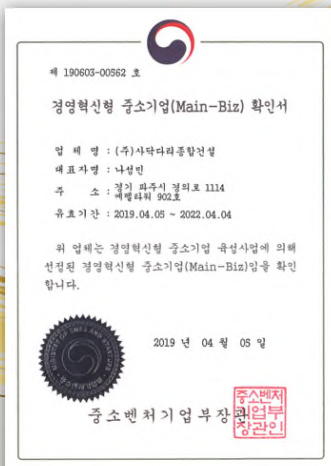
변호사
김대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5층(서초동, 라이프선교재단빌딩)
 (02) 522-4531~2 (02) 522-4529 010-5624-4530
 이메일 : 999kdj@hanmail.net

전문분야
 교회사건, 부동산,
 건축, 형사

사닥다리종합건설이 2019년 4월 5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사닥다리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북한에 200교회 이상 건축을 위해 달려가는 기업”

효율적이고 믿을 만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건축현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초기 규모 검토부터 관련업체 선정, 사업비 관리, 금융관련업무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나성민 장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에펠타워 9층
 전화 : 031-816-4670 | 팩스 : 031-948-4670
 이메일 : sadakdari_d@hanmail.net